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1

2023.09.04.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08월 14일, 우형찬 의원 외 2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9.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우형찬 의원)

가. 제안이유

○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자연재난 · 사회재난)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주요내용

가.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 발생 이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이행 추진 여부의 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실태조사 이후 평가 조항 신설의 필요성(안 제7조제3항 신설)

○ ‘필수노동자’ 라는 용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최전방 노동자’ (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된 개념으로 핵심노동자(Key Worker),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로 통칭되는 의미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는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1]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2] 재난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인 업무의 종사자로 볼 수 있음.[3]

---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2022년 기준 48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809만명)의 17.3%로 나타났으며, 매년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손연정,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22-14, 2022년.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자연재난[4]과 사회재난[5]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6]에서는 '대규모 재난'을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시장에게 필수노동자

---

4)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5)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6)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 <신 설>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재난 종료 후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필수노동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보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61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훈,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정지웅, 한ㆍ신,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자연재난 · 사회재난)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 ② (생 략)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